

노동관계법 준수 자가진단표

[현장 예방점검의 날]

귀사는 현장 예방점검 대상 사업장입니다. 이에 귀사가 노동관계법령 등을 지키고 있는지 이 「자가진단표」를 활용하여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자가진단시 궁금하신 내용은 「노무관리 가이드북」*을 활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* 파일 내려받기: 고용노동부(www.moel.go.kr) → 정보공개 → 기타정보 → 자주 찾는 자료실 → “노무관리 가이드 북”

2022년

1. 근로조건 서면 명시

| 법 조항 | 진단 사항 및 방법 | 진단 결과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|
| 근로기준법 제17조 (근로조건 명시) | <p>▶ 근로계약을 서면(전자문서 포함)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주었는지? * 서면 작성 + 근로자에 교부</p> | <input type="checkbox"/> 준수 <input type="checkbox"/> 미준수 |
| | <p>▶ 근로계약서에 법령 상 규정된 근로조건을 명시했는지? * ①임금(항목, 계산·지급방법), ②소정근로시간, ③유급휴일, ④연차유급휴가 등 [표준 근로계약서 참고]</p> | <input type="checkbox"/> 준수 <input type="checkbox"/> 미준수 |
| 기간제법 제17조 (근로조건 서면명시) | <p>▶ 기간제·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서면(전자문서 포함)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주었는지? * 서면 작성 + 근로자에 교부</p> | <input type="checkbox"/> 준수 <input type="checkbox"/> 미준수 |
| | <p>▶ 기간제·단시간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법령상 규정된 근로조건을 명시하였는지? * ①근로계약기간, ②근로시간·휴게, ③임금의 구성항목·계산방법 및 지불방법, ④휴일·휴가, ⑤취업장소·종사업무, ⑥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(⑥은 단시간근로자 한함)</p> | <input type="checkbox"/> 준수 <input type="checkbox"/> 미준수 |

2. 임금명세서 교부

| 법 조항 | 진단 사항 및 방법 | 진단 결과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|
| 근로기준법 제48조 (임금명세서) | <p>▶ 임금지급할 때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였는지? * 임금지급일, 임금총액, 임금구성항목, 임금계산방법, 임금공제내역 ✓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·시간 등에 따라 달라질 경우 작성(연장·야간·휴일근로의 경우에는 시간 수 포함)</p> | <input type="checkbox"/> 준수 <input type="checkbox"/> 미준수 |

3. 최저임금 준수

| 관련 법 조항 | 진단 사항 및 방법 | 진단 결과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|
| 최저임금법 제6조 (최저임금의 효력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근로자에게 금년도의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지 * '21년 시급 8,720원, '22년 시급 9,160원 | <input type="checkbox"/> 준수 <input type="checkbox"/> 미준수 |

4. 임금 등 각종 금품 지급

| 관련 법 조항 | 진단 사항 및 방법 | 진단 결과 |
|---|---|---|
| 근로기준법 제36조 (금품 청산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근로자가 사망·퇴직시 임금,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였는지 * 해고, 합의해지, 정년 등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모든 경우 해당 * 당사자간 합의로 지급기일 연장가능 (연 20% 지연이자 포함) | <input type="checkbox"/> 준수 <input type="checkbox"/> 미준수 |
| 근로기준법 제43조 (임금 지급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였는지 * 다만, 법령·단체협약에 규정이 있는 경우 일부 공제나, 통화 이외 다른 것으로 지급 가능 * 친권자, 법정대리인, 임금채권 양도인 등에게 대신 지급 불가 | <input type="checkbox"/> 준수 <input type="checkbox"/> 미준수 |
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였는지 * 다만, 1개월을 넘는 기간에 대한 수당,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등은 예외임 | <input type="checkbox"/> 준수 <input type="checkbox"/> 미준수 |
| 근로기준법 제56조 (연장·야간 및 휴일근로) 5인 미만 미적용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연장·야간·휴일근로시 통상임금의 50%를 가산 지급했는지 * 연장: 법정근로시간 초과(단시간근로자는 소정 근로시간 초과) * 야간: 22시~06시 * 휴일: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50%, 8시간 초과시 100% 가산(연장근로가 되어도 휴일가산 수당만 지급) | <input type="checkbox"/> 준수 <input type="checkbox"/> 미준수 |



서울지방고용노동청(02-2231-0009)

서울강남지청(02-584-0009)
서울서부지청(02-713-0009)
서울북부지청(02-950-9880)

서울동부지청(02-403-0009)
서울남부지청(02-2639-2100)
서울관악지청(02-3281-0009)

충부지방고용노동청(032-460-4545)

인천북부지청(032-540-7910)
의정부지청(031-877-0009)
경기지청(031-259-0204)
안양지청(031-463-7300)
평택지청(031-646-1114)
강릉지청(033-650-2500)
태백지청(033-552-0009)

부천시청(032-714-8700)
고양지청(031-931-2800)
성남지청(031-788-1505)
안산지청(031-412-1992)
강원지청(033-269-3551)
원주지청(033-769-0800)
영월출장소(033-374-0009)

부산지방고용노동청(051-853-0009)

부산동부지청(051-559-6688)
창원지청(055-239-6500)
양산지청(055-387-0009)
통영지청(055-645-0009)

부산북부지청(051-309-1500)
울산지청(055-272-0009)
진주지청(055-752-0009)

대구지방고용노동청(053-667-6200)

대구서부지청(053-605-9000)
구미지청(054-450-3500)
안동지청(054-851-8000)

포항지청(054-271-6700)
영주지청(054-639-1111)

광주지방고용노동청(062-975-6200)

전주지청(063-240-3400)
군산지청(063-452-0009)
여수지청(061-650-0108)

익산지청(063-839-0008)
목포지청(061-280-0100)

대전지방고용노동청(042-480-6290)

청주지청(043-299-1114)
충주지청(043-840-4000)
서산출장소(041-661-5694)

천안지청(041-560-2800)
보령지청(041-931-6640)

노동관계법 준수 자가진단표

[현장 예방점검의 날]



고용노동부

(우)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
상담문의 (국번없이)1350